

식품에 '고기' '肉' 단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Need of Legal Basis to Use 'Meat' in Food Name

윤요한 (Yohan Yoon)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지구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에 지구의 인구가 9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육류 소비량 증가가 지구 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의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동물의 생명윤리를 중요시하는 인식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식품 기업들이 식물 단백질, 해조류 단백질, 미생물 단백질 등을 가공하여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식품을 일반적으로 '대체육'이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기'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어사전에 '고기'는 '식용하는 동물의 살(근육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에 대해 '대체육'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체육을 뜻을 풀어보면 '대체되어진(하는) 고기'라고 보아야 한다. 즉, '대체육'이라는 식품의 주성분은 동물의 근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의 근육을 이용하지 않고 식물 단백질, 해조류 단백질, 미생물 단백질 등을 이용하여 고기의 질감을 만들어낸 식품을 '고기'라고 보기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식품에 대해 '고기를 대체한 식품'이라는 뜻으로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체육'이 아닌 '육류 대체식품'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식품과 관련된 용어의 법적 정의는 '식품위생법(법률 제17809호)'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위임받은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6호)'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고기'나 '육'에 대한 정의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제 1. 총칙, 3. 용어 풀이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 원료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축

*Corresponding author: Yohan Yoon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Tel: +82-2-2077-7585
Email: yyoona@sookmyung.ac.kr

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7249호) 제2조(정의)에는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법적으로 ‘고기’나 ‘육’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식육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육류대체 식품에 ‘고기’나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식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식품들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단백질 대체 식품의 경우 ‘Alternative Protein’, 육류대체 식품은 ‘Animal Product Alternatives’, 재료에 따라 ‘Plant-based’, ‘Cell-based Animal Product Alternatives’로 명칭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육류대체 식품에 대해 ‘고기(meat)’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와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육류 대체식품에 대해 보통 ‘대체단백질식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식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외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기’나 ‘육’에 대한 정의를 법률이나 고시 사항에 포함시켜 ‘육류대체 식품’이 ‘고기’와 구분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